

山林種苗政策에 바람

農林新聞社 編輯部提供

文化의 發展과 더부여 木材需要가 급증으로 增加하자, 木材需要에 對한 供給의 非彈力性은 結果的으로 國際原木市場의 時勢를 暴騰시켰을 뿐만아니라 앞으로 木材需要의 洋洋한 將來를 앞두고 供給법을 어떠한 方法으로 充當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것이 오늘날 林業에 주어진 基本課題이다.

그러므로 各林業先進國에서는 제2차 世界大戰이후 林木育種事業이 慧星처럼 登場하고, 이와 並行해서 山林種苗法을 制定했거나, 또는 立法을 서둘러 種苗의 品種管理와 形質生產에 置重하는 것이 최근 世界林業의 動向이 되고 있다.

이러한 一連의 措置는 一般農事에서 한번 잘못 選擇한 種苗는 1년 또는 數年農事에 影響하고 말지마는, 林業에서 잘못 選擇한 種苗는 百年을 두고 그 劣勢性이 累積되어 林業을根本적으로 失敗로 몰고 가기 때문에 너무도當然한 일이다.

우리나라도 늦기는 하였지만, 61년 山林法 制定 때 造林用種苗의 「檢査制度」를 두었으며, 또 山林種苗生產販賣를 業하는 者는 一定한 資格者가 道知事에게 登錄을 하고, 이 登錄者는 種苗生產監督를 받게하는 등의 規程을 둔 것은 우리나라 林業史上種苗政策의 進一步라고 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本欄에서 指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73년도에 山林法施行令 및 同施行規則 第17條를 改正해서 마을과 學校도 山林種苗生產販賣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事實은 林業技術的見地에서 確實히 後退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이다. 現行山林法 第15條의 造林用種苗의 檢査制度와 造林用種苗生產者의 資格을 規定한 그 法精神은 山林種苗는 아무나 生產해서는 안되고, 적어도 林木의 遺傳形

質, 樹木生理, 地域的 品種問題등 林業의 基礎理論을 아는 사람이 生產해야 된다는데 그 根本目的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마을이나 學校도 山林種苗生產販賣가 可能하도록 길을 터놓은 自體는, 말을 바꾸면 國民 누구나 山林種苗生產販賣를 할 수 있다는 解釋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問題의 焦點은 山林法 第15條를 아무리 擴大解釋한다 하더라도 山林法施行令이나 行規에서 마을이나 學校가 山林種苗生產販賣를 할 수 있는 資格者로 規定한 것은 理解와 納得이 가지 않는다. 마을 養苗가 마을 所得과 結付된다고는 하나, 養苗所得이 林業種苗의 品種管理만큼 重要한 것이 못되는 것이며 마을 養苗가 部落住民의 愛林思想鼓吹에 뜻이 있다하나, 現今에 있어서의 造林이 愛林思想으로 誘導되기는 참 어려운 事實이라는 点을 正視하여야 하는 것이다. 보기에는 같은 苗木같아도, 形質이 千差萬別하며, 種子의 由來, 造林 以后耐寒性問題, 授粉樹配列問題등 交리를 물고 技術問題가 隨伴되는 것들을 技術者가 아닌 마을이나 學校에 맡겨, 더구나 共同作業으로 다룬다는 自體는 크게 危險한 일이라고 지적해 두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마을이나 學校등에 많은 養苗를 勵獎함으로써 一般이 養苗를 하면 收支가 맞는 줄 알고 市場性이 없는 苗木를 너도 나도 大量生產하여 需給處가 없어 生產費以下로 放賣함으로써 生產者가 家計의 破綻은 물론 低質의 苗木까지 끼어 無秩序하게 種苗가 生產販賣되고 있음은 林業將來를 위하여 크게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노파심에서 이곳에서는 山林種苗政策에 對한 우리의 見解 몇가지를 言해두고자 한다.

첫째로 于先 現行山林法施行令 및 行規則

第17條는 73年度改正 이전으로 還元시키고, 마을과 學校의 苗木生產은 林木의 品種管理내지는 林木의 生態學의 知識을 필요치 않는 樹種에 限定할 것이며, 그것도 마을 自體造林用生產에 그치고 原則的으로 生產販賣를 禁止시켜야 한다.

둘째는 山林法上 登錄業者가 아닌 一般生產分은 販賣를 금지시켜야 한다. 山林法制定이후 法에 依한 登錄業者가 아닌者가 生產販賣하여 犯法者로 摘發되어 處罰을 받았다는 말을 아직까지 들어보지를 못했다. 事實上 이러한 事例가 없어서 處罰받은 事例가 없었다면 多幸한 일이지만, 法에 依한 登錄者가 아닌者가 生產販賣한 일이 있었는데도 이를 規制하지 못했다면 法이 死文化한 것이므로, 우리는 山林法精神에 充實하기 위하여 一罰百戒로 단一件이라도 處罰하는 事例를 보고싶은 心情이다.

세째로 山林種苗生產이 資本集約의이고 技術集約의이기 때문에 一般農事나 他祖宗業의 副業이 되어서는 優良苗生產을 保障할 수 없으므로 種苗生產의 專門技術化와 企業化가 時急하다. 이에 對한 對策으로서는 山林苗木은 市場性이 없으므로 指定生產制를 固守해야 하며, 指定量이 零細해서는 專門企業化가 어려우므로 生產者 1人當 最少限 年間成苗施業量 기준으로 2百萬~3百萬本이상 指定生產이 必要하다. 어느 一定規模이상의 指定과 同時에 技

術과 資本이 結合調和되도록 해야한다. 이를 토면 一生을 山林苗木生產에 從事해서 技術은 他的 追從을 不許할만큼 技術을 가졌으나 資本이 없어서 種苗生產販賣登錄을 해놓고도 實地生產을 할 수가 없는이가 있는가 하면, 그反面에 現行山林法上 種苗生產販賣登錄資格은 안되나 先代부터 苗圃業을 하여 地와 苗圃에서만 使用하는 農器機等을 確保하고 있고 이業에 뜻을 두고 또 資本이 있어서 種苗生產販賣業을 해보려고 하는個人이나 法人이 있어도 登錄을 할 수 없어 生產이 不可能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問題点의 解決은 現行山林法施行規則 第17條에 技術資格을 所持한 者를 雇傭한個人 또는 法人은 生產販賣가 可能하도록 새로운 項을 設定, 苗木生產이 專門企業화가 되도록 유도해야 効果적이라는 점을 강조해두는 것이다.

네째로 苗木生產에 있어 當面한 問題로서 苗圃勞動力供給의 不足現象에 對備한 苗圃의 機械化를 서둘러야 하며, 借地料上昇으로 因한 生產費壓迫을 解消脫皮하기 위한 固定自家 苗圃의 確保가 絶對的으로 必要하다는 점을 감안 農機器나 苗圃購入은 다같이 莫大한 資金을 必要로 하므로 關係當局은 低利融資金을 駛旋, 苗圃業을 安定基調위에 올려 놓음으로써 健苗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